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7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할 경우라도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세대주등(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세대주등을 말한다)이 법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	법 제95조제5항	30	50	100
나.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5를 위반하여	법 제95			

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	조제2항			
1) 한 사람에게 수차례 복무기관 내 괴롭힘 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 힘을 한 경우		500	1,000	1,000
2) 그 밖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		300	1,000	1,000
다. 법 제31조의6제2항·제5항·제6항·제7항 ·제9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95 조제3항			
1) 법 제31조의6제2항·제7항·제9항을 위 반한 경우	제1호	300	500	500
2) 법 제31조의6제5항·제6항을 위반한 경 우		200	300	500
라.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 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5 조제1항 제1호			
1)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게 하 지 않은 경우				
가) 1개월 미만		300	400	500
나)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		600	800	1,000
다) 3개월 이상		1,200	1,600	2,000
2)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 무하게 하지 않은 경우				
가) 1개월 미만		150	200	250
나)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		300	400	500
다) 3개월 이상		600	800	1,000
마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조에 따른 전문연 구요원의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통보한 경우	법 제95 조제1항 제2호			
1) 신상변동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		2,000	2,000	2,000
2) 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				
가) 1개월 미만		300	400	500
나)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		600	800	1,000
다) 3개월 이상		1,200	1,600	2,000
3) 법 제40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				
가) 1개월 미만		50	100	150
나)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		100	150	200

다) 3개월 이상		200	300	400
바. 법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	법 제95조제3항제2호	100	300	500
사. 법 제7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	법 제95조제3항제2호	30	60	100
아.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	법 제95조제4항	100	200	300